

지방세법

총평	서울시 지방세를 수탁지방직에 통합한 첫해로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서 제대로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90점이상이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출제경향	1. 지방세기본법(7문제) - 징수방법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납세담보 제공방법 - 지방세우선권-법정기일 - 이의신청 - 범칙행위처벌 2. 지방세징수법(3문제)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체납처분 - 간접적 납부유인제도 3. 지방세법(8문제) - 취득세 과세표준(1) - 취득세 과세표준(2) - 재산세 비과세 - 재산세와 자동차세(소유)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종합문제 4. 지방세특례제한법(2문제) - 지방세특례의 근원법원 - 자경농지 감면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②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③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 ④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답> ④ ①②③은 절대적압류금지 재산이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이다.

문 2.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②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답> ②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여기서 총액이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문 3.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 ②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③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답>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 4.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답>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 제출사유이나,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납세증명서 제출사유가 아니다.

문 5.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장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답> ③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私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1항).

문 6. 다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法源)의 총 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약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④ 이 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法源)의 총 개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하여 총 6개 법률

이고, 따라서 위 자료에서는 5개 법률 모두 해당한다.

문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③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답> ④

제척기간		
구 분	내 용	제척기간
지방세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	10년
	②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①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③ ② 이외의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④ 그밖의 경우	5년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③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문 8.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 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를 제외한 토지를 별도합산토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문 9.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③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④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이다.

<답>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문 1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②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답>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항).

문 11.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징수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레저세

③ 등록면허세

④ 재산세

<답> ④

세율의 구분

구분	신고납부가 원칙인 조세	보통징수가 원칙인 조세	특별징수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신규면허) •지방교육세(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자동차세(주행)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1년초과면허) • <u>재산세</u> •지방교육세(보통징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보통징수 가능 •자동차세(소유)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특허권) •주행 -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가산세 여부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금	•가산세와 가산금

문 1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답>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7조 제1항).

문 1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②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시설의 유료도로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④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답> ②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시설의 유로도로는 과세대상이다.

<참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①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①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문 14.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법정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출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음)

④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답>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납세의무자	납세지
①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② 입국반입자/우편반입자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③ 면세담배를 처분한 자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
④ 위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반입하는 자	㉠ 담배를 제조한 경우 : 담배를 제조한 장소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문 15.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만을 모두 고르면?

- ㉠. 레저세 납세의무자
-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 ㉣.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 항공기 소유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답> ②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150조).

①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④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⑥ 재산세(재산세과세특례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⑦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문 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① 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③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④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면제한다.

<답> ① 농기계보관용 창고도 포함한 창고에 대하여는 50%를 경감한다.

<참고조문>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문 1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③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
 취득

<답> 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
 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항). 따라서 화해에 의한 유상승
 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액이 아니다.

문 1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입 및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④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답>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2조).

문 1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ㄴ. 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ㄷ.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답>

옳은 것	ㄱ, ㄴ, ㄹ
틀린 것	ㄷ.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문 20. 「지방세기본법」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만을 고르면?

ㄱ. 고발 ㄴ. 몰수 ㄷ. 무혐의 ㄹ. 통고처분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답> ③ 범칙사건의 처분종류 :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제1항). 따라서 몰수는 대상이 아니
 다.
 ㉠ 통고처분
 ㉡ 고발
 ㉢ 무혐의